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월간 뉴스레터

2017년 4월호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내용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최종 확정
- 최근 변경·시행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안내

세무정보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OECD BEPS 동향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내용 (2017.4.19)
**K-IFRS 제개정
내용**
**선지급
해외 구매자산의
환율적용시점
명확화**
**매각예정 주식의
주식기재 명확화**
**지분법 면제 규정
보완**
(1) 개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 중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제·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개정 (2017.4.19 금융위 확정)

(2) 주요내용

가. 선지급 해외 구매자산의 환율적용시점 명확화 (해석서 제2122호 제정):

① 환율적용 시점

- i) 해외 거래처 등으로부터 물품 취득시 대금을 외화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인수시점에 해당 물품을 장부에 계상함.
- ii) 이 경우 물품 취득가액에 적용할 환율은 “물품인수시점”의 환율로 할 것인지 혹은 “대금지급시점”의 환율로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였음.
- iii) 외화대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자산을 수령하여 장부에 계상할 때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금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도록 함. 반대로 해외에 물품을 팔면서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품을 인도하면서 수익을 인식할 때에도 “대금수령시점”의 환율을 적용함.

②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나 조기적용도 가능함.

나. 매각예정 주식의 주식 기재사항 명확화 (기준서 제1112호 개정):

① 주식기재사항

- i) 타 기업 지분이 매각예정 등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주식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기준서 제1112호에 규정한 여타 정보(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분정보 등)도 생략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였음.
- ii) 요약재무정보 이외의 기준서 제1112호에 규정한 나머지 사항은 주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음.

② 적용시기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다. 지분법 면제 규정 보완 (기준서 제1028호 개정):

① 지분법 면제 규정

- i)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유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주1) 지분 등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를 각각의 관계기업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상 해석이 다양하였음.
- ii) 금번 기준서에서는 관계기업별로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주1)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②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나 조기적용도 가능함.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관리
강화-회사측면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최종 확정

■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관리 강화 - 회사측면

(1) 주요 내용

- 가. 내부감사(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시·통제 강화
 - i) (내부감사의 조사 및 조치) 회계처리 위반 관련 내부감사 의무 명확화
 -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시 외부전문가(법무법인/회계법인 등)를 선임하여 조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 동시제출
 - ii) (공시강화)
 -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간 감사방식 협의·정보교환이 활성화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
- 나. 회사 내부고발 활성화
 - i) 포상금 상향
 -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 ii) 내부신고자 보호
 -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상향(*주1) 하고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주2) 를 신설
 (*주1)(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선) 5천만원 이하
 (*주2)(신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공익신고자보호법 수준)
-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 i) 감사인 인증수준 강화
 - 회사(상장회사 및 자산 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수준을 현행의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함.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도입(‘18년 감사보고서)하여 전체 상장회사로 단계적 확대함.
 - 확대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 : ‘18년 감사보고서(149개 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 ‘20년 도입검토(220개 법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 ‘22년 도입검토(741개 법인)
 대상법인 전체 : ‘23년 도입검토
 - ii) 대표이사 보고의무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별도의 상근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감사 및 주주에게도 보고하도록 함.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보고대상도 이사회 및 내부감사에 한정된 상황임.
 - iii) 회계담당자 관리
 - 내부회계 담당이사 및 직원을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서 별도등록·관리 → 담당자 책임성 및 교육 등을 통한 역량 제고
- 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
 - i) 제한적 연기 허용
 - 현재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로 규정된 금융위 및 거래소에 대한 사업·감사 보고서 제출기간을 회사- 감사인간 의견조율, 감사자료 추가 확인 필요 등으로

시간을 더 요할 경우 제한적 연기를 허용함.

- 다만, 투자자에게 재무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것도 중요한만큼, 별도절차(*주1) 와 요건(*주2) 도 적용

- (*주1) ①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간 사전협의 필요
- ② 회사가 금감원에 미리(제출기한 7일전) 제출기한 연장계획 신고
- ③ 지연사유를 미리 공시
- (*주2) ① 연장 허용기간은 5영업일로 제한
- ② 해당 종목이 기간연장 중임을 투자자 등이 알게 함(DART/KIND)
- ③ 기한연장은 연 1회로 제한

■ **감사품질 제고 - 감사인 측면**

**감사품질 제고 -
감사인 측면**

(1) 주요 내용

가.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

i) 직권지정제 확대

-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하여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지정제(이하, 직권지정)의 지정사유를 추가함.
- ①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
 - ◎ (최초안) 별점 4점 → (수정안) 별점 8점(건당) 이상
- ②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내)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재취업 포함)
- ③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ii) 선택지정제 도입

- 운영방식 :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 도입
- 지정대상 :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
 - 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 등을 고려 →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회사, 금융회사
 - ② 비교적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소유 및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잦은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상 지배구조 측면), 최근 소액공모, 최대주주의 자금대여,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이상 재무상황 측면), 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종·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및 신규 상장회사 등은 분식회계의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임.
 - ③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속하는 상장회사 → 예)수주 산업
- 예외 :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사유는 예외를 인정
 - ①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 다만, 상당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 한하여 상장이 허용된다고 인정되는 거래소 →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
 - ②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 100개국 이상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적 회계법인에 한함.

- 추천방식 : 선택지정 대상회사는 「감사인추천위원회」(현행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후보군(pool)을 증선위에 제출 → 회사가 감사인 추천시 감사보수 사전협의를 금지하고, 회사 규모에 비해 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을 추천하는 경우 재제출 요청후 필요시 직권지정 또는 우선 감리대상으로 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
- 시행시기 :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원칙을 적용. 회사별로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주1)에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시 3년간 지정된 감사인이 감사.
 (*주1) 시행시 선택지정 사유가 있는 회사로서 과거 6년간 한번도 지정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부터 시행 → 예) 개정법 '17년 공포, '19년 시행시 '13~'18년까지의 선임현황(계속 자유선임, 지정, 감사인 변경 여부 등)을 보고 지정대상 여부 결정

나. 핵심감사제(KAM) 확대 도입

- i) 수주산업에 적용('16년 7월~)해오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회사 규모를 고려하여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 확대 도입
- ii)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우선 적용['18년 사업보고서~('19년 작성)] → 자산 5천억원 이상('20년 사업보고서~) → 1천억원 이상('22년 사업보고서~) → 유가·코스닥 전체('23년 사업보고서~)

다.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 강화

- i) 비감사용역(컨설팅 등)을 수임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미국·EU)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
 -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를 추가
 - ① 매수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 ②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 ③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
 - 아울러, 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하여 모회사의 감사인은 자회사의 비감사용역 수행을 제한

라.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

- i) 일정수준 이상 감사시간 확보로 정상적인 외부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공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ii) 다양한 기업사정(자산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감사 필요시간을 정하고 이를 자율규제로 운영(자율규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
-감독당국 측면**

■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 - 감독당국 측면**

(1) 주요 내용

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i) 감사인 등록제도

-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를 마련.
- 현행 제도는 형식적 요건(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 등)만 충족하면 금융위에 등록(공인회계사법 제24조)할 수 있고, 상장회사 감사 가능.
- 추후에는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감리결과 일정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은 회계법인 역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인 지정시에도 등록된 감사인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금감원 감리제도 개선

i) 감리제도의 개선

-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매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선택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
- 10년 주기로 전수감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감원 실무인력을 확충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감리를 위한 감리권한 강화 추진을 병행.

다.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i) 제재 내용

- 임원 직무정지를 신설, 해임권고시 병과하고 직무정지 기간내 해임되지 않은 경우 정지 연장 및 지정·감리 등 별도조치
- 회사·감사인·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
 - ① 회사 : 과징금 부과한도 폐지[분식금액의 10%로 하되, 20억 초과시 20억(외감법 전부 개정안) → 분식금액의 20%로 하고 상한 폐지]
 - ② 감사인 :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및 한도 폐지(자본시장법상 감사보수 2배→5배, 20억원 한도 → 폐지)
 - ③ 개인 :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 감사(감사위원 포함)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 ④ 부과시효 : 과징금 부과시효를 현행 5년→8년으로 연장하고, 감리가 개시된 경우 시효 진행을 중지
- 현행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5~7천만원 이하 수준의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하는 가운데, 징역·벌금의 필요적 병과 추진
- 부정청탁·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 손해배상 시효 적용기간 연장(3년→8년)

라. 공시의무 및 회계교육 강화

i) 공시의무 및 회계교육 강화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및 감사인의 감사품질과 관련한 공시기능을 적극 활용한 회계투명성 확보
- 회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계교육협의회를 통해 교육 콘텐츠 공유,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회계교육 활성화

**최근 변경·시행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안내**
최근 변경·시행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안내(금융감독원 2017.4. 6.)
(1) 개요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은 '17년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 체결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함. 다만, 금번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17년 5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됨.

회사가 기한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는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에 고발함.

(2)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
가. 외부감사대상 및 면제기준

i) 외감대상 : 2016 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 총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2017 년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① 자산총액이 120 억원 이상
- ② 자산총액 70 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 억원 이상
- ③ 자산총액 70 억원 이상 & 종업원수 300 명 이상
- ④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ii) 외감면제 :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좌거래정지 등의 사유(*주 1) 가 발생한 회사는 외부감사의무가 면제됨. 다만, 외감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기존 외부감사 면제사유가 해소(*주 2) 된 경우에는 외감대상이 되므로 매년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함.

(*주 1) 당좌거래 정지처분, 청산 중, 합병으로 소멸될 회사,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중인 회사 등

(*주 2) 국세청 휴업신고로 외감제외 되었으나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영업을 재개한 경우,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 경매 조치가 해제된 경우 등

나.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i) 감사인 선임 승인 : 사업연도 개시후 4 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 선임. 다만,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5 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됨.

ii)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주 1)은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없이 감사인을 선임하면 감사인 지정대상임

(*주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대기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iii) 선임보고

① 주주에게 보고 : 감사인 선임사실을 아래의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알려야 함

-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서 보고
-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②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 보고 : 회사는 초도감사¹이거나 감사인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고하고, 감사인은 계약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보고

iv) 보고기한 :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 주 이내 보고

v) 제출서류 : 회사는 감사인 선임보고 공문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① 감사계약서 사본
- ②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③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 ④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vi) 제출방법 : 전자보고시스템(filer.fss.or.kr 로그인→외부감사보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반드시 전자로 접수하여야 함.

¹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되거나, 과거에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 외부감사대상으로 다시 편입된 경우

세 무 정 보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2017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 관련 4법 제·개정안이 2016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개정된 지방세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관계법이 3법에서 4법 체계로 확대 개편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는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의 접근과 이해가 어렵고, 가지 조문이 많아 비효율을 야기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채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으로써 독립 법제화하였습니다.

국민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을 반영

구 분	기 존	개 정	시행시기
신용카드 납부방법 확대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추가	2017.6.1. (지방세징수법)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제도 연장 ※ 동시신고 대상: 소득세(국세),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	~ 2016.12.31.	~ 2019.12.31	2017.1.1.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절차 간소화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별 처리	본점 소재 지자체 일괄처리	2017.1.1. (지방세법)
상속인 국외 거주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 요건 완화	상속인 모두 국외거주	상속인 일부 국외거주	2017.1.1. (지방세법)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 연장	2 개월	3 개월	2017.3.1. (지방세기본법)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1 개월 신고 50% 감면	2 ~ 6 개월 신고시	2017.3.1.

감면 확대		20% 감면 추가	(지방세기본법)
-------	--	-----------	----------

지방세 특례제도의 합리적 정비

구 분	주요내용	시행시기
연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취득세 75%, 재산세 50%, 등록면허세 100%) - 농·어업법인(취득·재산세 50%) - LH 임대용 공동·다가구주택 (취득·재산세 50%) - 비영리단체(취득·재산세 100%) 등 	2017.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설계 건축물 감면(취득·재산세 신축 :10→50%, 대수선 :50→100%) -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취득세 50%, 최대 100만원) - 전기차(취득세 140→200만원 공제확대), 수소차(취득세 200만원 공제신설) - LNG 연료추진선박 취득세 감면(세율 2% 경감) 신설 	2017.1.1. (지방세법)

납세자 세부담 완화

구 분	기 존	개 정	시행시기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전환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과세	차량등록원부가 있더라도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2017.1.1. (지방세법)
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 확대	건축물 대장상 주택	주택 사용승인 건물,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 추가	2017.1.1. (지방세법)
외국인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요건 보완	과세기준일(8.1.) 현재 외국인 등록	과세기준일(8.1.) 현재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2017.1.1. (지방세법)

기타

구 분	기 존	개 정	시행시기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과세표준 5억 초과)	3.8%	4%	2017.1.1. (지방세법)
외국인 체납자료 법무부 정보제공	-	일정체납요건 ^(*) 시 외국인자료 제공	2017.3.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	-	지방세 해석의 전문성제고 등을 위해 지방세 예규심사위원회 설치	2017.3. (지방세징수법)

(*) ①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②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

OECD BEPS 동향
(1)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정 추가 서명 국가 발표

OECD는 2017년 1월 27일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정에 추가 서명한 국가들을 공개했습니다. 본 다자간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for Country-by-Country Reporting)은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국가 간 자동교환을 위한 장치임으로써 다자간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본국에서 신고된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계열사가 소재한 국가들과 자동교환하게 됩니다.

최근 다자간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가봉, 헝가리,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몰타, 모리셔스, 러시아 등 7 개국이 있으며 이로써 현재까지 다자간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57 개국에 이릅니다.

(2) BEPS 프로젝트 Action 5 와 13 에 대한 상호검토 문서 공개

OECD 는 2017 년 2 월 1 일 BEPS 프로젝트 Action 5 와 13 에 대한 상호검토 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BEPS 프로젝트 참여국의 상호검토(peer review)는 BEPS 프로젝트의 15 개의 Action

주
요
내
용

중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에 해당하는 4 개의 Action39 에 대하여 참여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Action 5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3** 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등이 최소기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호검토 문서는 상호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검토 국가의 권한과 검토 방법론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 이 사건 재무제표가 ○○○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재무제표 작성 당시 적용된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이 증명된 바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2015두55295, 2017.03.16).

■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여부

청구법인은 외국 본사에 제공한 쟁점용역이 “여행업”이 아닌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크루즈 본사와 체결한 국제대리점 계약서에 “청구법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여행사를 통하여 휴가여행의 홍보 및 판매사업에 종사”하고(설명조항), “크루즈 본사는 ○○○ 등의 브랜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선상 크루즈 휴가여행을 대한민국에서 여행사를 통하여 홍보 및 판매할 비독점적 권리를 청구법인에 부여하며, 청구법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본 계약조건에 따라 여행사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제1조)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한국 여행객들에게 외국 본사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과 렌터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홍보하며 그에 대한 안내, 예약, 판매업무를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외국 본사와 체결한 쟁점용역 계약은 결국 청구법인의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

조·예약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여행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관에도 크루즈사업, 렌터카사업 뿐만 아니라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여행업”이 아니라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6서2655, 2017.03.17).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